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2022. 12.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 국 모

1. 제출경위

- 가. 의안번호: 22-118
- 나. 제 출 자: 마포구청장
- 다. 제출일자: 2022년 11월 15일(화)
- 라. 위원회 회부일자: 2022년 11월 18일(금)

2. 제출사유

구세 자동이체 납부 신청 및 전자고지 이용자의 증대를 위해 인센티브(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구세 감면 관련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종교단체의 의료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 규정 삭제(안 제2조)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경감률 직접 규정
- 나.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상향(안 제14조의2)
 -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만 신청: 250원 ⇒ 800원
 -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 600원 ⇒ 1,600원
- 다. 부칙 개정을 통한 적용시한 연장(안 부칙<조례 제1278호, 2019.12.26.> 제3조)
 - 2022년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규정의 적용 시한을 3년 연장

4.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5. 검토보고

- 동 조례 개정안은 2022년 11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개정안은 구세 징수의 편익 도모와 징수율 제고를 위해 시행 중인 구세 자동이체 납부 및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그 밖에 구세 감면 관련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되었음.
- 개정안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종교단체의 의료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 규정을 삭제(안 제2조)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서 해당 경감률을 조례에 위임하던 규정이 2021년부터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임.(경감률은 동일하므로 동 조항의 삭제는 무방하다고 판단됨)
- 또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고 있고(안 제14조의2),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마일리지 제도를 폐지하고 있음.

<개정 전,후 비교 표>

신청 구분	세액공제액		마일리지 적립액		공제 한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전	개정 후	
전자송달or 자동이체	250	800	350 *(850)	0(폐지)	250 ~ 800
전자송달& 자동이체	600	1,600	500	0(폐지)	500 ~ 1,600

- 개정안의 세액공제액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¹⁾내의 금액이며 고지율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해 서울시 표준안에 따라 25개 자치구 공동 개정사항임을 감안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한편, 서울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급되는 마일리지는 중복지원 논란이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 그리고 부칙 제3조의 개정은 이 조례의 효력 적용시한인 2022년 12월 31일이 도래하여 그 기한을 다시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역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근거한 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한편,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에 의한 납부신청자 증가추세(정기분 등록면허세에 한함)를 보면 2019년 7,255건 / 2020년 10,249건 / 2021년 12,778건 / 2022년 15,41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고지율 및 징수율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납부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요한다 할 것임.

1)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부터 1천6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 관 계 법 령 】

□ 지방세특례제한법('19.1.1.시행, 법률 제16041호로 '18.12.24.일부개정된 것)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략)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감율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고,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가. 특별시·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나. 가목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⑤ (생략)

□ 지방세특례제한법('22.1.1.시행, 법률 제18656호로 '21.12.28.일부개정된 것)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략)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2. 삭제 <2021. 12. 28.>

⑤ (생략)

□ **지방세특례제한법**(‘22.7.5.시행, 법률 제18682호로 ‘22.1.4.타법개정된 것)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 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이하 생략)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부터 1천6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1.3.25.시행, 서울특별시조례 제7955호로 ‘21.3.25.타법 개정된 것)

제3조(전자납세자의 선발 및 지원) ① 개인 납세자(전자고지를 받는 납세자로서 서면고지와 병행하여 고지받는 납세자는 제외한다)가 서울특별시세 등 정기분 세목을 전자고지로 받아 제2항의 방법으로 납부한 때에 전자납세자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②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전자적인 방법”이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 자동응답시스템, 은행 간 자동 계좌이체제도, 무인공과금 수납기, 금융기관 홈페이지, 모바일 등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전자납세자에 대한 실비보상은 납부건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상당액에 해당하는 마일리지(mileage)를 개인 납세자 주민등록번호별로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적립하는 방법에 따른다.
1. 고지서 건당 부과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건당 350원.
 2. 고지서 건당 부과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건당 850원. 다만, 자동이체자는 납부건당 500원.
- ④ 적립된 마일리지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교통카드 충전
 2. 서울역사박물관 또는 서울특별시립미술관 무료입장 교환권 발권(특별전시는 제외한다)
 3. 지방세 등 납부할 세액의 차감
 4.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부
 5. 배우자,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양도
 6.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 대체
 7. 전자납세자가 신청하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무료입장 교환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⑥ 제3항에 따라 적립된 마일리지는 적립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